

1. 개정이유

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사항(’24.1.9.) 반영, 규제업무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절차 개선,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개선의견 등을 반영하여 「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」을 정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사항 등 반영(안 제12조제1항, 제13조제1항)
- 나. 국무조정실 비용분석 지침 개정사항 반영(안 제7조제4항)
- 다.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사후정비(안 제13조제3항, 제15조제1항)
- 라. 업무 환경변화에 맞추어 비용분석 절차 개선(안 제5조제4항, 제5조제5항, 제6조제1항, 제6조제3항)
- 마. 방송통신규제심사위 구성 규정 보완(안 제12조제3항, 제12조제4항, 제13조제2항)
- 바. 규제심사 절차 및 사전검토 요청서 양식 현행화(별표 및 별지1)
- 사. 현행 규정 상 "공무원이 아닌 위원"을 "민간위원"으로, "공무원인 위원"을 "정부위원"으로 변경(안 제12조제1항, 제12조제3항, 제12조제4항, 제13조제1항, 제13조제2항, 제1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행정규제기본법」 및 동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지

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387호

「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한다.

2025년 06월 02일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중 "규제비용분석 전문기관(정보통신정책연구원)에 규제비용분석을 의뢰"를 "규제비용분석을 진행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하며, 규제비용분석 전문기관(정보통신정책연구원)에 규제비용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"를 "한다"로 한다.

제6조제1항 전단 중 "활용하여 초안을"을 "활용하여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규제비용분석 전문기관(정보통신정책연구원)의 규제비용분석 결과는"을 "규제비용분석을 진행하고,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규제비용분석 전문기관(정보통신정책연구원)의 규제비용분석"을 "규제비용분석"으로, "초안을 작성한 후,"를 "작성한 후"로 한다.

제7조제4항 중 "직접 비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용관리 표준절차를 적용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비용전문위원회(국무조정실)로부터"를 "규제개혁위원회 비용분석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"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7인"을 "10인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민간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제12조제3항 전단 중 "위원은 공무원인 위원과"를 "민간위원은"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공무원인 위원"을 "정부위원"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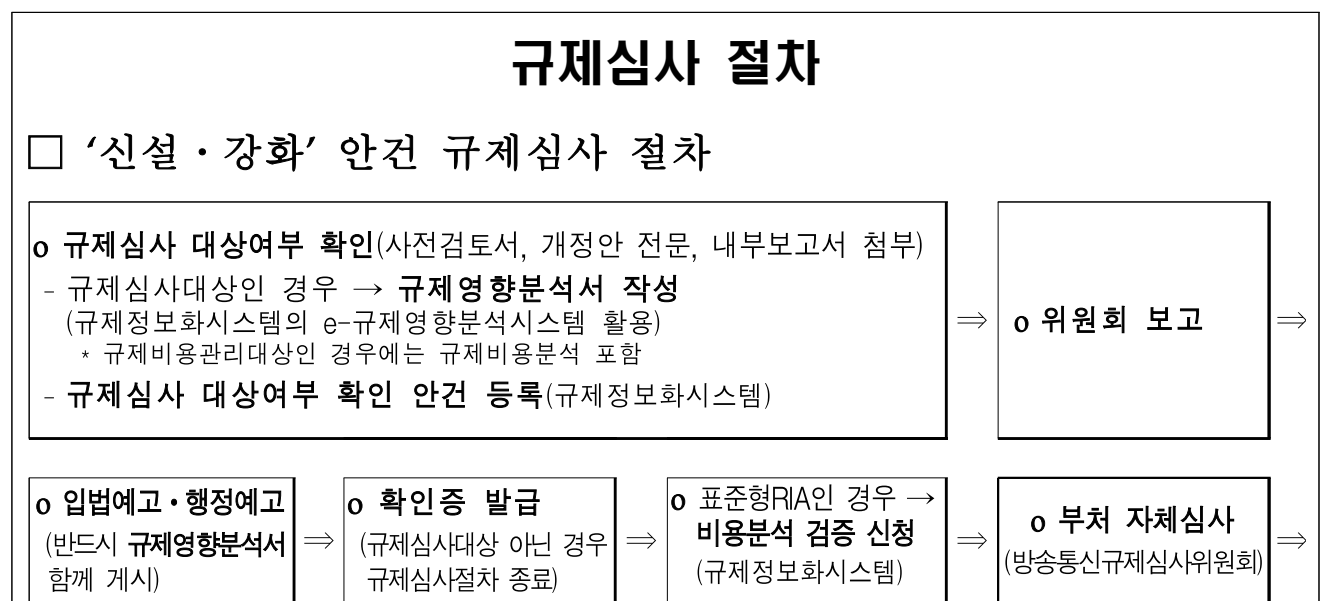
제13조제1항 중 "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"을 "민간위원"으로, "연임"을 "한 차례만 연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"잔임 기간으"를 "남은 임기"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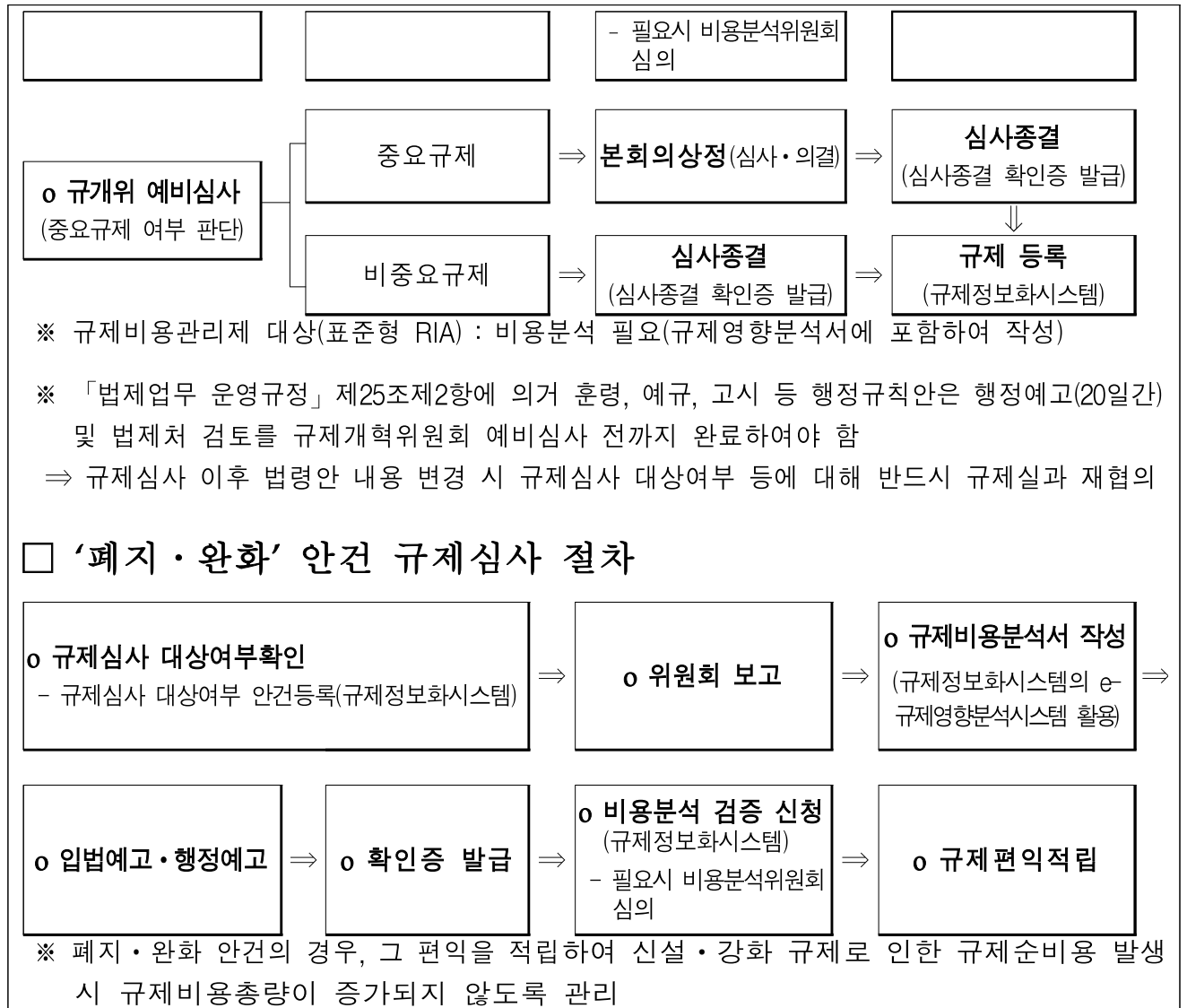
②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"통할한다"를 "총괄한다"로 한다.

제18조 중 "공무원이 아닌 위원"을 "민간위원"으로 한다.

별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
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

1. 법령명			「○○법」 일부개정법률안 (방송통신위원회)		
2. 제·개정 주요내용	신설·강화 규제 해당		가. 주요내용(안 제0조 제0항) - 내용		
	규제심사 비대상	폐지·완화 규제 해당	가. 주요내용(안 제0조 제0항) ※기존에 규제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 후 기재 - 내용		
		폐지·완화 규제 미해당	가. 주요내용(안 제0조 제0항) - 내용		
	행정조사 포함여부		미포함		
3. 입법(행정)예고 기간			'20. 0. 00. ~ '20. 0. 0. (40일간) (예정)		
4. 시행일			공포한 날부터 시행	제때마련법안 여부	
5. 국정과제 및 정부 주요대책 후속 조치 신설			해당사항 없음		
6. 예상 이해관계자			○○업계(○○회사, 관련 협회 등)		
7. 타 법률과의 관계 및 기타 참고사항			해당사항 없음		
8. 소관부처 및 담당자			방송통신위원회 ○○○국 ○○○과 ○○○ 사무관(044-000-0000)		

붙임	조문별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현행	개정안	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
현행 조문 적시	<u>제·개정안 조문 적시</u>	<규제심사 대상> <규제심사 비대상 : 폐지·완화 규제 해당> <규제심사 비대상 : 폐지·완화 규제 미해당> ○ 사유 상술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5조(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검토 및 확인) ① ~ ③ (생략)		제5조(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검토 및 확인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	
④ 소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·강화하는 경우로서 규제심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‘규제영향분석서’를 작성하여야 하며, 비용관리제 대상(표준형RIA(Regulatory Impact Assessment))인 경우에는 <u>규제비용분석 전문기관(정보통신정책연구원)에 규제비용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.</u>	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규제비용분석을 진행</u> ----- ----- -----.		
⑤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라도 폐지·완화 규제인 경우에는 ‘규제비용분석서’를 작성하여야 하며, <u>규제비용분석 전문기관(정보통신정책연구원)에 규제비용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.</u>		⑤ ----- ----- ----- <u>한다.</u>		
⑥·⑦ (생략)		⑥·⑦ (현행과 같음)		
제6조(규제영향분석서 등 작성 및 공표) ① 신설·강화 규제에 대한 ‘규제영향분석서’는 반드시 규제정보화시스템(https://ris.g		제6조(규제영향분석서 등 작성 및 공표) ① ----- ----- -----		

o.kr)의 e-규제영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, 이를 보정하여 ‘규제심사대상 확인’ 안전 등록시 첨부하여야 한다. 규제비용관리대상인 경우 규제비용분석 전문기관(정보통신정책연구원)의 규제비용분석 결과는 그 결과가 나오는 즉시 ‘규제영향분석서’에 반영하여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폐지·완화 규제에 대한 ‘규제비용분석서’는 규제비용분석 전문기관(정보통신정책연구원)의 규제비용분석 결과가 나오는 즉시 규제정보화시스템(<https://ris.go.kr>)의 e-규제영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, ‘규제심사대상 확인’ 안전 등록시 첨부하여야 한다.

제7조(규제비용의 관리) ① ~ ③ (생략)

④ 비용관리제 대상(표준형RIA)으로서 직접 비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용관리 표준

-- 활용하여 -----

----. -----
규제비용분석을 진행하고, ---

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규제비용분석 -----

----- 작성한 후 -----

-----.

제7조(규제비용의 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규제개혁위원회 비용분석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

절차를 적용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비용전문위원회(국무조정실)로부터 ‘비용적정성 심의’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, 폐지·완화 규제도 이와 같다.

⑤ (생략)

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민·관을 각각 대표하는 공동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후단 신설>

② (생략)

③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과 방송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④ 공무원인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하되, 공석인 경우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대행한

는 경우 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

----- 10인 -----

--. 이 경우 민간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민간위원은 -----

--. <후단 삭제>

④ 정부위원-----

다.	--.
제13조(위원의 임기) ① <u>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</u> <u>위원의 임기는 2</u> <u>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</u>	제13조(위원의 임기) ① <u>민간위원</u> ----- ----- <u>한 차례만 연임</u> ----- -----.
<신 설>	② <u>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</u> <u>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</u>
② <u>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</u> <u>는</u> <u>위원의 임기는 전임</u> <u>위원의</u> <u>잔임 기간으로 한다.</u>	③ ----- ----- <u>남은 임기</u> -----.
제1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<u>위원장</u> <u>은</u> <u>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</u> <u>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</u> <u>할한다.</u>	제1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----- ----- ----- <u>총</u> <u>괄한다.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8조(수당 등) <u>공무원이 아닌</u> <u>위원 및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</u> <u>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</u> <u>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</u> <u>수 있다.</u>	제18조(수당 등) <u>민간위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